

제공일자	2012. 4. 13(금)	담당자	이기형 금융정책실장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9051)	연락처	3775-9014
			총 2 매

제목: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공제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을 위한 소규모 보험업 허용 검토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이기형 금융정책연구실장은 『일본 소액단기보험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012년 3월 15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우체국 보험과 4대 대형공제가 향후 2년 후(우체국보험은 3년)부터 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이들 공제 계약자들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이외 다수 공제들은 현행 보험업법상 감독을 받지 않아 공제 계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공제계약자 등을 포괄하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공제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험업법에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과 같은 소규모 보험회사를 허용하여 공제가 단계적으로 보험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소액단기보험업은 자본금 1,000만엔을 구비하고 내각총리의 등록을 받아 설립할 수 있으며,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보험가입금액이 소액(사망 300만엔, 의료보험 80만엔, 손해보험 1,000만엔)이며 보험기간이 2년 이내의 보험상품으로 제한됨.

보험과 공제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여 약정한 위험이 실현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하나의 보험업의 범주에 해당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제에 대해서도 보험법규를 적용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보험회사 수보다 많은 90여개 이상의 공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약관설명의무, 재무건전성 확보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제에 대한 감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제기관의 설립 추이)

설립	신설 공제수				합계
	일반공제	조합공제	정책성 공제	소계	
1950년대	1(수협)	1	-	2	2
1960년대	1(농협)	3	-	4	6
1970년대	-	2	-	2	8
1980년대	1(신협)	7	-	8	16
1990년대	1(새마을)	7	1(건설공제)	9	25
00년-05년	-	10	1(과학기술인)	11	36
06년 이후	-	10	2(노란우산,경기 사회복지)	12	48
연도 합계	4	40	4	48	-

자료 : 오영수 외 2인(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p.37에서 정리함.

국내 보험환경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공제에 대한 감독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에 보험업법에 소액단기보험업을 허용하여 2008년부터 근거법 없는 공제를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였다. 공제가 보험업법의 소액단기보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 보험업에 해당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은 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립자본금을 최저 1,000만엔으로 크게 낮추었고 등록제를 채택하였으며, 기존 보험회사와 차별화된 상품·자산운용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 또한 기존 보험회사들도 특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제에 대한 미비한 감독제도로 인한 취약한 보험소비자 보호와 공제와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차이로 인한 보험업의 미흡한 공정경쟁 여건은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과 같은 소규모 보험회사를 도입하여 근거법 없는 공제나 근거법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제들을 보험업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KIRI Weekly를 참고하세요.

<http://www.kiri.or.kr>